|  |  |  |
| --- | --- | --- |
| **1.6.1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 실행과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2002년 6월 7일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우리나라의 도시화 진행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생활쓰레기 수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일한 도시 쓰레기 처리 투자 채널, 필요한 시설건설/운영 및 유지보호 자금의 부족, 처리 시설의 심각한 부족, 보편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처리 수준으로 인해 상당수 도시의 토양, 용수, 대기가 생활쓰레기로 인해 오염되고 있고 생태환경 및 대중의 생활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도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관심을 받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생활쓰레기 처리 속도의 가속화, 쓰레기 처리 품질의 제고, 도시 생태환경의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의 관련 규정 및 당 중앙과 국무원의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 관련 제도 구축에 따라 쓰레기 처리 산업화를 위한 결정을 시행한다.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도시 생활쓰레기 비용수취제도를 실행하고 쓰레기 처리 산업화를 촉진하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쓰레기 처리의 양성 순환을 촉진한다. 도시 생활쓰레기는 도시 인구가 일상 생활 과정에서 배출하거나 도시의 일상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도시 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 폐기물(건축물 쓰레기 및 폐기물이 섞인 흙을 포함. 단, 공업 고체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생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모든 국가기관, 기/사업단위(교통운수도구 포함), 개체경영자, 사회단체, 도시주민 및 도시 임시거주인구 등은 모두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하고 쓰레기 처리 체제의 개혁을 촉진하며 행정-비즈니스, 정부-기업의 분리를 실행하고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은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투자융자 채널을 확대하며 투자융자 환경을 개선하며 국내외의 자금을 장려한다. 민영기업 자금을 쓰레기 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시장경제 요구에 부합하는 쓰레기 처리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현재의 쓰레기 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초래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한다. 2. 쓰레기 처리비용 기준의 합리적 제정 및 쓰레기 무해화 처리 능력 제고쓰레기 처리 산업화 요구에 따라 환경위생기업이 수취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경영서비스 성격의 요금이다. 수수료 기준은 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원가의 보상 및 합리적인 이윤창출을 원칙으로 조사하여 결정한다. 또한 서로 다른 상황으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원가에는 주로 운송도구비용, 재료비용, 동력비용, 유지보수비용, 시설 및 설비 감가상각비용, 인건비 급여 및 복리비, 세금 등을 포함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취기준은 도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문이 건설(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문과 공동 제정하고 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집행한다. 또한 성급 가격, 건설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은 행정사업 성격의 수수료로 관리하고 있기에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고 환경위생 시스템 개혁과 결합하여 신속하게 경영 서비스 성격의 수수료로 전환해야 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수취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격 청문회 제도를 실행한다. 3. 과학적인 계산 수취방법의 제정과 비용수취 관리 강화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간편성, 효율성, 조작 용이성의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비용수취 대상에 따라 상이한 계산방법을 선택하고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수취한다.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호구 또는 주민 인원수를 단위로 수취할 수 있다. 도시 임시거주 인구 관리에 포함된 주민 및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사람을 단위로 수취할 수 있다. 생산경영단위에 대해서는 상업적 판매네트워크를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수취할 수 있다. 선박, 기차 및 비행기 등 교통도구의 경우에는 조사하여 확정된 적재 톤수 또는 좌석수를 기준으로 수취할 수 있다. 기타 생산경영단위가 발생시키는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람을 단위로 계산하여 수취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과 공업폐기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상호 중복하여 계산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에서는 생활 쓰레기 용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수취할 수 있다. 실직하고 직업을 스스로 찾는 사람과 도시의 실직 근로자, 실업자 및 최저생활보장대상에 대해서는 수취 감면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및 수취방법, 비용 수취 감면방법은 도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수취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취비율을 제고한다. 비용을 수취하는 상이한 대상 별로 타겟을 맞추어 조치를 도입하고 규정과 시간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 전액을 납부하도록 장려한다. 비용을 대리하여 수취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수취한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수수료 기준은 쓰레기 처리비용 기준을 제정할 때 분명히 한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임의로 감면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조치를 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모두 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비용 지불에 사용하며 모든 부서 및 단위는 이를 압류 및 유용할 수 없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이미 투자하여 건설중인 쓰레기 처리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수취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보충 사용할 수 있다. 단, 건설중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완공되고 또한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 4. 쓰레기 처리 운영 메커니즘의 개혁과 쓰레기 처리 산업화의 촉진각 지역은 도시 전체 계획과 건설계획에 따라 생산 쓰레기 처리 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계획과 건설계획을 제정하고 시설배치와 규모가 합리적이도록 처리해야 한다.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시장화 운영방식에 따라 구역별 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은 국가 또는 유관 부문이 발표한 산업정책, 기술정책, 건설기준 및 환경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과도기적 간편처리시설을 폐쇄하며 끊임없이 쓰레기 처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무해화, 감량화, 자원화”의 원칙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며 폐기물 회수 및 종합이용을 장려한다.생활쓰레기 처리는 그 출발점부터 확실히 장악하고 점진적으로 쓰레기 수거기업이 사구(지역사회), 소구(단지), 주민 주택 등에서 최초로 발생한 쓰레기 수거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며 여러 주체가 관리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방식을 회피한다.쓰레기 처리 체제를 개혁하고 기업화 관리를 실행한다. 쓰레기 처리단위는 정부와 기업, 행정과 비즈니스의 분리를 실현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공개 입찰 및 경매방식을 통해 우수하고 자질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여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경영, 도급경영, 임대경영 등 다양한 종류의 운영방식을 모색하여 건설 및 운영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제고한다. 도시 건설(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문은 시장진입제도를 수립하고 공개 입찰 및 경매 방법을 통해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기업(단위)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계약 체결을 통하여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한다. 쓰레기 처리 기업(단위)은 경영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하며 독립결산하고 이윤 및 결손을 스스로 책임지는 기업화 관리를 실현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도시 건설(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문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처리기준과 서비스 품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고 명령하여 시정해야 한다. 오염위험이 존재하는 쓰레기 처리장소에 대해서는 개조방안을 제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돈 개선하도록 책임지고 명령한다. 각 급 환경보호부문은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의 환경품질에 관한 검측 검사를 강화하고 처리수준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2차 오염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 5. 비용수취 행위의 규범화와 기/사업단위 및 주민의 불합리한 부담 경감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수취한 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기타 수취항목을 취소하여 기/사업단위 및 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켜야 한다. 물업관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물업관리 비용 수취기준에서 이미 계상된 쓰레기 처리 비용 수취 관련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각 도시 인민정부는 완전한 비용수취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수취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각 급 가격, 재정 주관부문은 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에 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이상 각 지역에서 이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집행하여 주길 바란다.  |  | **国家计委、财政部、建设部、****国家环保总局关于实行城市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促进****垃圾处理产业化的通知**2002年6月7日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随着我国城市化进程的加快，城市生活垃圾数量也在迅速增加。由于城市垃圾处理投资渠道单一，缺少必要的设施建设、运行和维护资金，处理设施严重不足，处理水平普遍不高，相当一部分城市的土壤、水体、大气受到生活垃圾的污染，使生态环境和人民群众生活受到影响。解决城市生活垃圾问题已成为全社会关注的热点问题。 　　为加快生活垃圾处理步伐，提高垃圾处理质量，改善城市生态环境，促进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的有关规定和党中央、国务院有关建立城市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实行垃圾处理产业化的决定，经国务院同意，现就实行城市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促进垃圾处理产业化的有关事项通知如下： 　　一、全面推行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促进垃圾处理的良性循环 　　城市生活垃圾是指城市人口在日常生活中产生或为城市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产生的固体废物，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视为城市生活垃圾的固体废物(包括建筑垃圾和渣土，不包括工业固体废物和危险废物)。所有产生生活垃圾的国家机关、企事业单位(包括交通运输工具)、个体经营者、社会团体、城市居民和城市暂住人口等，均应按规定缴纳生活垃圾处理费。 　　实行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是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客观要求，促进垃圾处理体制改革，实行政事、政企分开，逐步实现垃圾处理产业化的重要措施。各地要充分发挥市场配置资源的基础作用，拓宽投融资渠道，改善投融资环境，鼓励国内外资金，包括私营企业资金投入垃圾处理设施的建设和运行，最终建立符合市场经济要求的垃圾处理运行机制，解决当前垃圾处理能力不足所造成的环境污染问题。 　　二、合理制定垃圾处理费标准，提高垃圾无害化处理能力 　　按照垃圾处理产业化的要求，环卫企业收取的生活垃圾处理费为经营服务性收费，其收费标准应按照补偿垃圾收集、运输和处理成本，合理盈利的原则核定，并区别不同情况，逐步到位。垃圾收集、运输和处理成本主要包括运输工具费、材料费、动力费、维修费、设施设备折旧费、人工工资及福利费和税金等。 　　垃圾处理费收费标准，由城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会同建设(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制定，报城市人民政府批准执行，并报省级价格、建设行政主管部门备案。目前垃圾处理费仍按行政事业性收费管理的，应创造条件，结合环卫体制改革，尽快向经营服务性收费转变。 　　制定、调整生活垃圾处理费标准要实行价格听证会制度。 　　三、制定科学的计收办法，加强收费管理 　　生活垃圾处理费应本着简便、有效、易操作的原则，按不同的收费对象采取不同的计费方法，并按月计收。对城市居民，可以以户或居民人数为单位收取；对纳入城市暂住人口管理的居民以及国家机关、事业单位，可以以人为单位收取；对生产经营单位，商业网点可以按营业面积收取；船舶、列车及飞机等交通工具可以按核定的载重吨位或座位收取；其它生产经营单位产生的生活垃圾，原则上以人为单位计收，生产垃圾处理费与工业废物垃圾处理费不得相互重复计收。具备条件的城市可以按照生活垃圾量计收垃圾处理费。对下岗职工自谋职业者和城市下岗职工、失业人员及低保对象，应实行收费减免政策。垃圾处理费的具体计收办法和收费减免办法由城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制定。 　　加强生活垃圾处理收费的管理，提高垃圾处理费的收缴率。应针对不同的收费对象，采取措施，鼓励其按规定、按时足额缴纳垃圾处理费。对代收单位，允许从收取的垃圾处理费中提取一定比例的手续费。手续费标准，在制定垃圾处理费标准时予以明确。任何单位和个人都不得擅自减免垃圾处理费。对不按规定缴纳垃圾处理费的，各地要采取措施加强管理。 　　生活垃圾处理费全部用于支付垃圾收集、运输和处理费用，任何部门和单位不得截留、挪用。对于生活垃圾处理设施不足，已经投资在建的垃圾处理设施，经城市人民政府批准，收取的生活垃圾处理费可用于补充生活垃圾处理设施的建设费用，但在建项目3年内必须建成，并实施垃圾处理。 　　四、改革垃圾处理运行机制，促进垃圾处理产业化 　　各地要按照城市总体规划和建设计划，制定生产垃圾处理设施专项规划和建设计划，处理设施布局和规模要合理。城市稠密地区，可按市场化运作方式建设区域性处理设施。垃圾处理设施的建设，要符合国家或有关部门颁发的产业政策、技术政策、建设标准和环境标准。要逐步关闭过渡性的简易处理设施，不断提高垃圾处理水平。 　　生活垃圾处理要坚持“无害化、减量化、资源化”的原则，积极推进垃圾分类收集，鼓励废物回收和综合利用。 　　生活垃圾处理应从源头抓起，逐步由垃圾收集企业负责社区、小区、居民住宅等源头的生产垃圾收集工作，避免多头管理，多头收费。 　　改革垃圾处理体制，实行企业化管理。垃圾处理单位应实行政企、政事分开，要引入竞争机制，通过公开招投标的方式，择优选择有资质的企业承担城市生活垃圾处理工作。积极探索特许经营、承包经营、租赁经营等多种运营方式，降低建设和运营成本，不断提高服务质量。城市建设(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要建立市场准入制度，通过公开招投标择优选择有能力的企业(单位)承担生活垃圾收集、运输和处理工作。通过签订合同，明确责任和义务。垃圾处理企业(单位)应转变经营管理体制，实现独立核算、自负盈亏的企业化管理，确实保证垃圾处理质量。 　　城市建设(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应加强对生活垃圾处理的监督管理，对达不到处理标准和服务质量的，应责令其改正；对现有存在污染隐患的垃圾处理厂应责令提出改造方案，限期整改。各级环保部门应加强对垃圾处理设施周围环境质量的监测检查，对处理不达标造成二次污染的，应按有关规定进行处罚。 　　五、规范收费行为，减轻企事业单位和居民的不合理负担 　　收取生活垃圾处理费后，应取消与生活垃圾处理相关的其他收费项目，切实减轻企事业单位和居民的不合理负担。已实施物业管理收费的，在物业管理收费标准中应扣除已计入垃圾处理收费的相关费用。 　　各城市人民政府应建立健全收费管理制度，保证垃圾处理收费制度的顺利实施。各级价格、财政主管部门要加强对垃圾处理收费的监督检查，对违反规定乱收费的，应按有关规定进行查处。 　　以上请各地认真贯彻执行。 |